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4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4. 2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준병의원)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조의2(인구영향평가)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인구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u> <u>④ 인구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 보건의료, 평생학습 등 특정 분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의 유희화, 과잉공급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등 인구변화로 인하여 행정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신설하거나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인구구조의 관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한다면, 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등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

< 주요 정책영향평가 사례 >

구분	환경 영향평가	규제 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부패 영향평가	고용 영향평가	아동정책 영향평가
도입 시기	1981	1998	2005	2006. 4 시행	2011	2019.3월 시행
주관 부처	환경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 법령	환경영향 평가법	행정규제 기본법제7조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부패방지법 제28조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도입 목적	• 환경오염 사전에방 등	• 규제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신설 방지 등	• 정부정책의 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 정책마련	• 부패사건차단 • 반부패정책 추진기반마 련 등	•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 아동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평가 대상	도시개발 등 17개 분야 · 80개 사업	규제 신설·강화 하는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 법규	모든 법령, 주요정책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중앙 · 지자체 정책	중앙 · 지자체 정책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주요 평가 기준	• 자연환경 • 대기환경 • 수환경 • 토지환경 • 생활환경 • 사회경제환경	• 규제필요성 • 대안의 발굴· 검토 • 대안별 비용 편익분석 •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 성별통계 · 수해분석 • 분석평가결 과에따른 정 책개선방안 • 성별고정관 념 · 특성 · 균형참여, 요구도 등	• 준수부담 합리성 • 제재규정 적정성 • 부패방지장 치의 체계성 • 특해발생, 이해충돌가 능성 등	• 고용창출의 경로 • 일자리 증감 • 고용의 질 변화	• 아동권리협 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 * (일반원칙) ▲ 무차별의 원 칙, ▲ 아동 최 선의 이익 원 칙, ▲ 아동의 생명·생존과발 달보장의 원칙, ▲ 아동의견 존 중의 원칙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외, 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¹⁾」을 개정(2024. 3. 26.)하여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공고 절차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4년 4월부터 인구정책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함.

- 구체적인 업무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평가, 정책 중요도와 평가 필요성이 큰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미래 사회·경제 환경 변화 전망 대응전략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국민인식 기반 정책 발굴 등임.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조사 및 연구업무의 위탁) ① 국가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

①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필요성

- 방대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일괄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기반 평가·환류 강화**
 -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3.3.28.)」 발표 시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등 정책 평가·환류 체계 강화 방안을 포함
- 인구정책 평가·환류 시 외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② 인구정책평가센터 주요 수행 업무

- ①시행계획 평가, ②심층평가, ③장기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④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⑤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등의 조사·연구 업무 수행

구 분	기 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	개 선 (인구정책평가센터 수행)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	▶ 연구용역 활용 ▶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정합성 검토 등 거쳐 확정 ※ 대상 과제가 방대하고 인력 부족으로 기관 평가 결과 단순 취합 수준에 불과	▶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성과(outcome) 중심으로 개편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심층평가	(신 설) *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군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	▶ 대상 사업 발굴 및 중장기 심층평가 수행 -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수행 ▶ 개선방안, 예산 관련 의견 도출
장기전망 및 대응 전략 수립	(신 설)	▶ 미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전망 및 대응전략 수립 ▶ 시뮬레이션 기반 정책 개입 영향 등 분석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신 설)	▶ 인구정책 주요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관 간 데이터 연계하여 지표 개발·생산 ▶ 세부지표 모니터링 실시 및 수시 평가 - 계층별, 지역별 분석 등 수시 실시하여 정책 작동 과정의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제시
국민인식 기반 정책발굴	▶ 연구용역 활용,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인식조사 실시	▶ FGI, 인식실태조사 등 국민인식조사 실시 ▶ 정책 수요 반영 아젠다 발굴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24. 4. 26.)

- 다만, 인구변화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책의 영향과 관계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인구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 주기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평가등을 실시하게 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억원씩 발생하여 5년간 총 10억원으로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인구영향평가 (안 제21조의2)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